

## 교직원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소속교직원의 포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교원과 직원을 따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으로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되며 심사위원은 각각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5. 1., 2019. 8. 1., 2021. 3. 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의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원은 교무팀장, 직원은 총무팀장이 한다.

**제6조 (심사요구)** 공적심사는 교원은 교무처장이, 직원은 사무처장이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 및 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2019. 8. 1., 2021. 3. 1.)

**제7조 (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적 심사기준)**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직무 실적을 중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료 한다. (개정 2021. 3. 1.)

1. 강사 또는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평소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직무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본교 재직 중 본 대학 발전에 공헌도가 큰 자
3. 평소 공적, 사적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단, 외부기관(국가기관 등)의 서훈, 포상 및 표창 추천시에는 해당기관 심사 추천 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9. 1., 2021. 3. 1.)

1.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 계류중인 자
2.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
3. 재직 중 직무에 불성실하였거나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원성을 사는 자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제9조 (심사방법)** 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공적사실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조사 확

인하여야 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공적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 제청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청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뛰어난 수상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

**제 10조 (수상인원)** 수상 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인원을 결정하되, 외부기관에서 정한 인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 1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총장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 1부
2. 교직원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3. 기타 공적증빙자료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제 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

**제 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처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1】

##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50자 이내)			
<b>조 사 자</b>			
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뒷 면)

㉘주요학(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㉙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